

2013 **11**

월간 중국농업 브리프

농정 이슈

- 시진핑 정부의 농업분야 주요 개혁과제 제시 1
- 「식품안전법」 개정 추진: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와 처벌 강화 3

가격 동향

-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8
- 소비자물가 10

무역 동향

-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11
-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13

주요 단신

- 10년 연속 식량 증산 전망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韩国农村经济研究院 北京代表处

농정 이슈

◆ 시진핑 정부의 농업분야 주요 개혁과제 제시

□ 개요

- 시진핑 정부의 향후 5년 동안의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三中全會)라 칭함)가 2013년 11월 9~12일 북경에서 개최
 - 제18기 3중전회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펼칠 국정 방향이 제시된 문건 '전면적 개혁 심화에 있어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채택
 - '결정'은 국가 전반의 개혁 심화에 초점을 두고 각 분야의 개혁 목표와 추진 과제를 제시(16개 목표, 60개 추진과제 제시)
- 농업분야와 관련해서는 '도농 통합발전'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 1)농업경영제도 안정 및 신형 농업 경영시스템 구축, 2)농민의 재산권 강화, 3)도농간 생산요소의 등가 교환 및 공공재 배분의 균형 실현, 4)농촌지역의 도시화 촉진을 주요 개혁 추진 과제로 제시

□ 농업분야 주요 개혁과제

- (농업경영제도 안정 및 신형 농업경영시스템 확립) 현행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규모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신형 농업경영시스템(개별농가경영, 협동경영, 기업경영 등) 발전 촉구
 - 시진핑 정부는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현대화를 농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핵심 주체로 전업농, 가정농장(家庭農場), 농민전업합작사(전문협동조합), 농기업 등 4대 농업경영주체의 역할 강조
 - 신형 농업경영시스템의 발전과 관련하여 특히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고 농외자본의 농업분야 투자도 장려.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실현하기 위해 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을 촉진하되 주로 4대 신형 농업경영주체에 농지가 집중되도록 유도
- (농민의 재산권 강화) 엄격한 경지보호제도하에 농민들에게 집체소유의 자산(예를 들어 도급 토지)에 대해 점유, 수익 및 유상 처분 그리고 저당권, 담보권, 상속권 부여 등 재산권 행사 강화
 - 또한 농가주택에 대해 물권을 보장하고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농가주택의 저당, 담보, 양도가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농민들의 자산수입 확대 도모

- 동지(同地)·동권(同權)·동가(同價)의 원칙하에 농촌집체 소유의 건설용 토지에 대해 유상양도(出讓), 임대, 지분출자(入股)를 허용하고 도시의 국가소유 건설용 토지와 동등하게 시장거래 허용 추진
- 농촌집체 소유 토지에 대해 수용 범위를 축소하고 수용 절차를 규범화하는 한편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및 토지수익 증가분에 대한 이익분배체계 확립 추진

○ **(도농 간 생산요소의 등가 교환 및 공공재 배분의 균형 실현)** 농민공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나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일노동(同工)·동일임금(同酬)'의 보장 강조

- 도농간 토지 수익의 차이 해소 및 농촌소재 금융기관의 예금이 농업·농촌에 사용되도록 유도. 이외에도 농업보조금제도 개혁, 식량주산지의 이익보상기제 완비, 농업보험제도 완비, 기업·사회단체 등이 농촌에서 각종 사업의 전개 허용 등을 강조
- 농촌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도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도농이원구조 해소를 위한 농촌공공투자사업의 확대 강조

○ **(농촌지역의 도시화 추진)** 농촌노동력 이전, 취업기회 확대, 소비 확대, 도농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중소규모 도시와 소성진(小城鎮), 특히 현(縣)과 진(鎮)의 중심도시에서 농촌으로부터 유출된 농촌주민의 도시주민화 촉진

- 중국 정부는 도시로 유출된 많은 농촌노동력이 호적제도로 인해 도시주민이 되지 못하고 도시생활의 각종 혜택도 누리지 못해 농촌노동력의 도시 이전과 도시화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인식
-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조건을 갖춘 농촌주민들이 도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고,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거주하는 농민들을 도시민화
- 조건을 갖춘 농민공, 특히 신세대 농민공들을 도시주민으로 흡수하여 현지 도시주민들과 동등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

□ 시사점

○ 중국은 경제성장 전략을 수출확대에서 내수확대로 전환한 이후 내수를 확대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의 하나로 농촌지역의 소비·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도농 통합발전은 더없이 중요한 정책 목표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임을 시사

- 도농 통합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제시된 농업분야의 개혁 과제들은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이슈는 아니며 후진타오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사안
- 다만 국가의 전반적인 개혁 심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도농 통합발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특별히 강조된 것은 내수확대 전략으로 전환한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판단

- 시진핑 정부가 농민들의 재산권 강화를 특별히 강조한 것은 도농 간 격차 확대에 따른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도농 간 격차 확대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도 높게 천명한 것으로 향후 주요한 정책목표가 될 것임을 시사
 - 농민의 재산권제도 개혁은 후진타오 정부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으나 주로 규모화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토지도급경영권의 권리 행사 보장에 초점
 - 시진핑 정부는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는데 이는 후진타오 정부의 개혁 내용과 차별화를 위해 시장경제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
- 중국의 도농 통합발전 정책은 결국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 확대에 귀결된다는 점에서 급속하게 팽창하는 중국의 식품소비시장에 우리의 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
 - 중국이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중부 거점도시군을 적극 육성중이어서 내륙의 2, 3선급 도시들의 소비시장 규모도 급속히 팽창 중
 - 최근 중국 동부연해 지역에 집중되었던 한국산 농식품 수출시장을 중국의 내륙시장, 특히 도농 통합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서부지역 시장으로 확대할 필요성 제기

◆ 「식품안전법」 개정 추진: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와 처벌 강화

□ 개요

- 중국은 「식품위생법」을 대체하여 2009년 제정된 「식품안전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며,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10월 29일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한 달 동안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 WTO 가입 후 국내외적으로 중국산 식품의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을 「식품위생법」(1995년 제정)을 기본법으로 하는 식품안전관련 제도의 결함에서 찾고 기존 법률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한 끝에 2009년 2월 「식품안전법」을 공포하고 6월 1일부터 시행
- 「식품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 3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을 신설¹⁾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舊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을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식품 생산·유통·소비 단계의 식품안전과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에 대해 일원화된 관리감독 실시
 - 식품안전관련 업무의 최상위 심의·조정기구인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는 존속시키되 구체적인 업무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담당하도록 조정(식품안전위원회의 사무국 역할 수행)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농업동향」 제6권 제2호 '2013년도 2/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참조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책임하에 작성된 「식품안전법」 개정안 초안은 총 10장 134조로 구성. 빠르면 2014년 3월 경에 개정 「식품안전법」이 확정되어 공표될 예정
- 개정안 초안은 총 10장 134조로 구성된 구 「식품안전법」과 비교하여 30개 조항이 증가

□ 「식품안전법」 개정안 초안의 주요 특징

○ 식품안전관리감독체계 개선 및 정부조직 개편 결과 반영

- 2013년 3월 시행된 국무원 조직 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부처 간 식품안전관리감독관련 담당 업무 조정(5조를 포함한 약 30여 개 조항)
- 식품 생산, 식품 유통 및 음식서비스를 구분하여 각각 허가제를 실시하던 것을 식품생산·경영 허가제로 통일(31조)
- 식품첨가제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첨가제생산·경영 허가제 실시(47조)
- 소규모의 식품가공·판매업, 음식점, 노점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제정 주체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로까지 확대(31조)

○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책임 강화

-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커다란 책임이 있음을 명문화(4조)
- 식품안전관리 업무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자격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생산·경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업 또는 겸직의 식품안전관리 인력을 보유하도록 규정(35조)
-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반드시 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에 대한 이력추적을 보장하도록 규정(39조)
- 식품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쇼핑몰 운영자는 반드시 식품생산·경영 허가를 취득하고 식품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규정. 또한 식품쇼핑몰 운영자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규정(59조)
-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강제성의 식품안전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65조)
- 일부 국가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참고하여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식품안전자체조사제도를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식품안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규정(60조)
- 영유아식품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제도 실시 규정. 영유아식품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은 반드시 원료, 생산품, 상표 등을 식품안전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탁, OEM 및 소조립 방식의 영유아 식품 생산을 금지한다고 규정(57조)

- 시장에서 퇴출된 식품이 다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리콜, 유통기한초과 등의 사유로 시장에서 격리된 식품에 대해 무해화처리, 소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62조)

○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

-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는 식품안전업무를 반드시 해당지역의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6조), 조사, 모니터링, 선전, 교육 등 조사식품안전관리감독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해당 지방정부의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93조)
-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가 식품안전관리감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책임자들을 징계한다고 규정(125조)

○ 식품안전관리감독체계의 혁신 강조

- 식품안전관리감독 업무는 예방이 최우선이고 위험관리, 전과정통제, 사회적 관리 원칙을 견지한다고 규정(3조)
- 위험관리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식품안전위험 정도를 구분하여 관리감독을 실시(91조)
- 식품안전관리감독기관은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식품안전관련 피해를 숨기거나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 또한 지방정부가 식품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중대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상부의 지방정부가 주요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99조)
- 의약품관리감독체계를 참고하되 상부의 식품안전관리감독기관이 식품안전관련 법률·법규 위반이 의심되어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식품생산·경영기업을 대상으로 돌발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100조)
- 식품안전관련 식품파파라치제도 실시 규정(101조)
- 식품안전관련 정보 공개의 규범화를 위해 언론매체는 식품안전문제를 반드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9조). 또한 임의의 개인 또는 단위가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안전 관리감독기관이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한 식품안전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103조). 임의의 개인 또는 단위는 사회 또는 식품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식품생산·경영기업, 업계 협회, 연구기관, 식품안전관리감독기관에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106조)

○ 식품안전문제의 사회적 관리 강조

- 식품안전관리감독기관과 식품안전위험평가기관은 과학·객관·즉시·공개 원칙에 따라 식품안전 위험교류(risk communication) 사업을 전개할 것을 규정(19조)

- 식품업계 협회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국가표준심의평가 위원회 위원에 식품업계 협회와 소비자협회의 대표가 포함되도록 규정(25조)
- 대중들의 식품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련 지식을 국민자질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관련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표준을 보급하는 한편 공익광고를 전개하도록 규정(9조)

○ 식품안전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위법 행위의 결과에 대한 처벌에서 위법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처벌로 전환(30조)
- 형사책임측면에서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의 연계기제 완비(107조)
- 행정책임측면에서 위법한 식품생산·경영기업,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및 위험평가, 식품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한 처벌 강화
 - 벌금은 기존의 5~10배에서 15~30배로 대폭 확대(110조)
 - 유기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영원히 자격 박탈(119조)
 -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및 위험평가 업무 담당 기관이나 담당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파면 또는 직위해제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120조)
 - 식품검사 담당 기관이나 담당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비용을 몰수하고 3~5배의 벌금 부과(121조)
- 민사책임측면에서 경제적 징벌을 더욱 강화
 - 최저액배상제도: 생산과 유통측면에서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 소비자는 손실배상청구 이외에도 생산자유통업자에게 지불한 금액의 10배 또는 손실액의 3배를 배상금으로 청구 가능. 배상액이 1,000위안 미만인 경우 1,000위안을 배상하도록 규정(127조)
 - 허위광고에 대한 징벌 강화: 광고 설계자, 제작자, 광고모델, 식품기업이 연대책임(63조)
 - 허위검사보고 또는 인증에 대한 징벌 강화: 식품검사기구와 인증기구가 배상 책임(121조, 122조)
 - 허위의 식품안전관련 정보 공개자에 대한 민사책임 강화(124조)

□ 시사점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농식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식품안전사고가 국내외적으로 빈발하는 원인을 제도적 결함에서 찾고 2009년 기존의 「식품위생법」을 대체하는 「식품안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
 - 당시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개선 조치는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정책 기초가 식품위생으로부터 식품안전으로 전환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식품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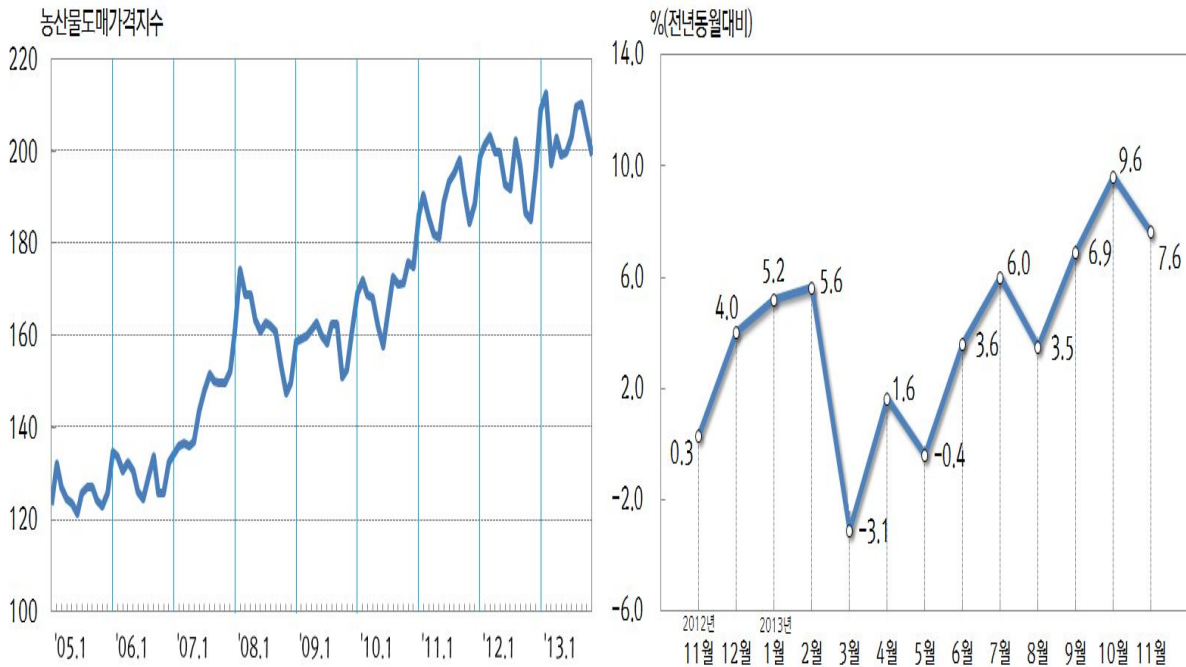
-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지 불과 4년 만에 법률 개정과 함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세계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가이미지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향후 식품안전관련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시사
 - 중국은 식품안전관리체계상 결함이 존재하여 그동안 식품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다원화체계에서 일원화체계로 전환하고, 식품안전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안전관련 정책 추진
- 중국은 이번 「식품안전법」 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중국산 농식품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개정안 초안의 일부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최종 개정안에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
 - 대표적으로 식품안전관련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규정(106조)은 정부와 식품생산기업이 식품안전문제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 공개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
 - 「식품안전법」 개정안 초안은 「식품안전법」과 비교하여 30개 조항이 증가하였지만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식품안전관리감독기관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규정. 단, 이들 기관의 권한 행사를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권력이 집중된 기관의 부패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 신선 식용농산물(재배업, 사육업 및 양식업 생산물)의 품질안전관리는 「농산물품질안전법」을 따르되 그 이외의 사항은 「식품안전법」을 준수하도록 규정. 식품과 구별되는 신선 식용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농업부와 식품안전관리감독관련 기관의 역할 불명확
- 그동안 한국산 농식품은 중국산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측면에서 반사이익을 얻었으나 중국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더욱 식품의 안전성을 개선하는데 주력하는 경우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의 양국 간 격차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산 농식품의 품질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 중국산과의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비할 필요
- 한중 FTA 등을 계기로 국내 농업인이나 농식품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출에 앞서 중국 농식품시장의 특성과 식품안전관련 정책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식품관련 표준 등의 정보를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

가격 동향

◆ 농산물²⁾ 도매시장가격

- 11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은 10월 대비 2.7% 하락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7.6% 상승. 다만 상승폭은 10월의 9.6%에 비해 2.0% 포인트 하락
- 채람자(菜籃子)농산물의 11월 도매시장가격은 10월 대비 3.2% 하락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9.3% 상승. 다만 상승폭은 10월의 11.8%에 비해 2.5% 포인트 하락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추이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2000년=100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

2) 식량 5개 품목(중단립종쌀, 장립종 쌀, 옥수수, 밀가루, 대두), 유지류 4개 품목(유채씨기름, 콩기름, 땅콩기름, 참기름), 채소 26개 품목(시금치, 배추, 청경채, 양배추, 상추, 가지, 파프리카(青椒), 토마토, 콩고투리(豆角), 무, 당근, 양파, 감자, 아스파라거스, 샐러리, 연근, 오이, 동과, 호박, 주키니호박,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부추, 대파, 화채(花菜), 브로콜리), 과일 7개 품목(부사사과, 압리(鴨梨), 감귤,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거봉포도), 축산물 5개 품목(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계란), 수산물 5개 품목(잉어, 민물연어(鱈魚), 초어(草魚), 붕어, 갈치) 등 총 52개 품목

○ 품목별 11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건고추, 양파, 마늘 등 주요 양념채소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크게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품목들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상승

표 1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2013년 7월~11월)

단위: 원, %

품목	7월	8월	9월	10월	11월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곡물	중단립종쌀(20kg)	17,480	17,349	16,943	16,733	16,707	-0.2	n.a.
	콩(1kg)	1,056	1,048	1,012	1,011	1,011	0.0	n.a.
엽근 채소	배추(10kg)	2,864	2,971	2,800	2,323	1,849	-20.4	63.1
	무(18kg)	4,924	4,920	5,072	5,062	4,583	-9.5	37.7
	양배추(8kg)	1,821	2,274	2,212	2,571	2,274	-11.6	53.8
	당근(20kg)	9,181	9,003	7,834	7,127	7,324	2.8	31.2
	감자(20kg)	8,483	8,602	8,153	8,000	8,336	4.2	25.8
양념 채소	건고추(600g)	2,642	2,585	2,410	2,331	2,524	8.3	-4.7
	양파(kg)	264	264	285	295	307	4.0	-34.8
	마늘(kg)	610	669	730	763	755	-1.1	-26.6
	대파(kg)	431	465	500	486	490	0.9	33.8
	쪽파(kg)	696	880	996	936	919	-1.8	17.1
과일	사과(부사, 15kg)	19,169	19,163	18,529	17,397	16,977	-2.4	8.2
	배(풍수, 15kg)	13,550	10,962	11,112	10,559	11,379	7.8	n.a.
	복숭아(kg)	969	888	1,001	1,025	1,059	3.2	16.7
	포도(거봉, 5kg)	8,354	7,189	6,744	6,559	7,542	15.0	n.a.
	감귤(만다린, kg)	892	929	824	643	565	-12.1	n.a.
	감(10kg)	5,931	6,160	6,008	5,153	5,179	0.5	10.0
과채	딸기(2kg)	5,387	6,757	9,631	15,619	18,206	16.6	84.4
	토마토(10kg)	4,352	4,374	5,778	7,249	7,970	9.9	57.6
	오이(kg)	455	459	576	638	633	-0.7	29.6
	수박(kg)	371	297	358	445	586	31.6	24.4
축산물	쇠고기(kg)	9,456	9,422	9,232	9,226	9,361	1.5	24.5
	돼지고기(kg)	3,762	3,938	3,913	3,839	3,810	-0.8	6.1
	닭고기(kg)	2,587	2,546	2,520	2,508	2,487	-0.9	-1.0
버섯	느타리버섯(2kg)	2,203	2,486	2,354	2,079	1,873	-9.9	-0.6
	새송이버섯(2kg)	2,934	3,269	3,938	3,354	3,143	-6.3	n.a.
	팽이버섯(2kg)	2,905	3,116	3,279	3,224	2,986	-7.4	-3.8
	표고버섯(2kg)	4,025	4,297	4,051	3,843	3,732	-2.9	0.9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

◆ 소비자물가

- 10월 소비자물가는 9월에 비해 0.1% 상승.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
 - 이 중 식품가격은 9월에 비해 0.4% 하락하였지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6.5% 상승
- 식품가격 상승은 신선채소가 주도(31.5% 상승). 신선과일, 수산물, 육류, 식량의 가격 상승률도 각각 8.8%, 6.4%, 5.8%, 3.8%로 식품가격 상승에 기여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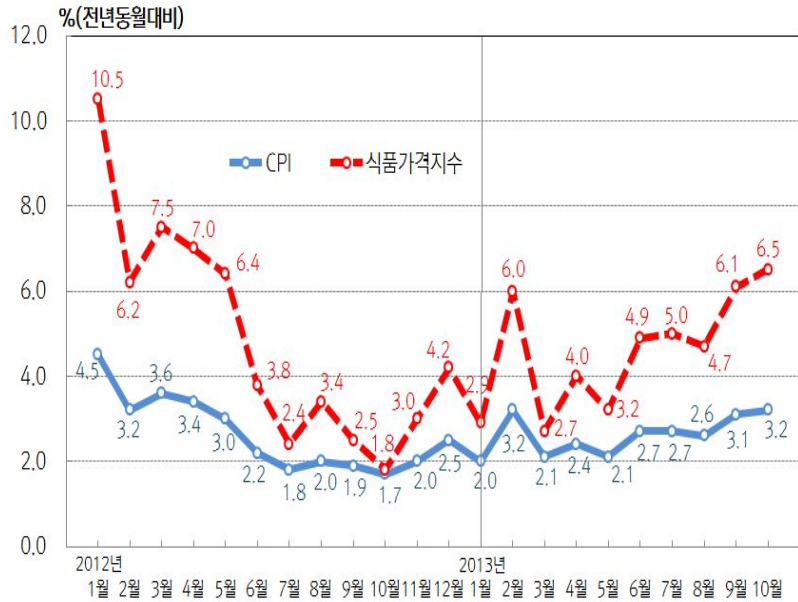


표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3.7월	8월	9월	10월	'13.7월	8월	9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0.1	0.5	0.8	0.1	2.7	2.6	3.1	3.2
◦ 식품	0.0	1.2	1.5	-0.4	5.0	4.7	6.1	6.5
- 식량	0.2	0.2	0.3	0.3	5.1	4.7	4.0	3.8
- 육류	1.1	2.3	1.4	0.0	5.9	7.2	6.6	5.8
- 조란(鳥卵)	-1.4	7.1	7.1	-5.9	1.3	0.3	1.3	-0.7
- 수산물	-0.6	-0.5	-0.1	-0.9	3.1	4.3	5.9	6.4
- 신선채소	2.2	7.6	6.7	-2.8	11.8	5.2	18.9	31.5
- 신선과일	-6.5	-3.0	5.4	-0.9	7.3	7.5	12.5	8.8
◦ 담배·주류 및 그 용품	0.0	0.0	-0.2	0.0	0.2	0.0	-0.2	-0.2
◦ 의류 및 복장	-0.6	-0.2	1.2	1.0	2.2	2.2	2.3	2.4
◦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0.1	0.1	0.0	0.1	1.4	1.4	1.4	1.5
◦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0.0	0.1	0.2	0.1	1.2	1.2	1.1	1.0
◦ 교통 및 통신	0.3	0.2	0.2	-0.3	-0.1	0.0	-0.2	-0.6
◦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0.8	0.0	1.0	0.8	1.3	1.2	1.9	2.5
◦ 주택(거주)	0.3	0.2	0.3	0.2	2.8	2.6	2.6	2.6

자료: 中國國家統計局(<http://www.agri.gov.cn>)

무역 동향

◆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 10월 농산물 수출액은 43.6억 달러로 9월에 비해 2.0%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5.6% 증가.
1~10월 누적 수출액은 42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

표 3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2013년 8월 ~ 10월)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8월	9월	10월	1~10월 누적액	10월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01류	산동물	53	46	49	435	6.5	-3.4	-4.5
02류	육과 식용설육	83	86	84	777	-2.3	-10.8	-0.7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51	54	50	439	-7.4	7.8	0.0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196	172	156	1,787	-9.3	9.9	4.6
06류	산수목·꽃	21	20	21	221	5.0	-0.5	7.3
07류	채소	633	602	601	6,335	-0.2	4.8	12.7
08류	과실·견과류	327	318	500	3,012	57.2	23.7	8.7
09류	커피·차·향신료	194	187	180	1,827	-3.7	12.6	13.0
10류	곡물	23	52	44	424	-15.4	102.8	10.8
11류	제분공업제품	53	53	51	501	-3.8	-7.1	0.9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식물, 사료	188	204	253	2,221	24.0	42.5	11.5
13류	식물성엑스	88	91	91	938	0.0	13.9	16.5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5	8	7	71	-12.5	-19.5	-5.5
15류	동식물성유지	42	53	49	497	-7.5	45.0	8.9
16류	육·어류조제품	748	788	728	7,323	-7.6	-3.8	2.6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130	121	130	1,185	7.4	24.4	15.8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29	37	9	289	-75.7	-72.0	13.3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34	132	133	1,245	0.8	3.6	1.4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628	585	610	6,323	4.3	3.1	2.7
21류	기타 조제식품	206	217	200	2,015	-7.8	11.9	11.5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127	136	132	1,058	-2.9	13.8	-6.4
23류	조제사료	221	203	177	2,346	-12.8	-35.4	-1.0
24류	담배	103	110	106	995	-3.6	34.0	3.0
합 계		4,283	4,275	4,361	42,264	2.0	5.6	6.0

자료: 「中國海關統計(月刊)」 第278期, 第288期, 第289期, 第290期

- 10월 농산물 수입액은 74.4억 달러로 9월에 비해 4.2%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7.1% 증가. 1~10월 누적 수입액은 75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
- 10월 주요 수입품목군은 HS 12류(37.7%), HS 15류(9.5%), HS 10류(9.3%), HS 04류(6.9%)
- HS 02류, HS 04류, HS 10류, HS 23류는 전년 동월 대비 수입액이 50% 이상 크게 증가

표 4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2013년 8월 ~ 10월)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8월	9월	10월	1~10월 누적액	10월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01류	산동물	32	18	62	320	244.4	9.7	-18.7
02류	육과 식용설육	535	520	489	4,869	-6.0	50.7	51.5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351	396	510	3,770	28.8	160.3	38.8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41	45	35	427	-22.2	-82.1	-84.3
06류	산수목·꽃	17	22	18	152	-18.2	22.4	41.5
07류	채소	154	153	206	2,063	34.6	47.8	1.2
08류	과실·견과류	277	367	263	3,491	-28.3	16.3	9.7
09류	커피·차·향신료	24	26	23	209	-11.5	-10.9	-11.0
10류	곡물	323	491	693	3,803	41.1	91.8	-10.3
11류	제분공업제품	57	68	78	593	14.7	48.3	28.4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식물, 사료	4,282	3,198	2,806	33,916	-12.3	-8.9	8.5
13류	식물성엑스	18	14	16	193	14.3	5.3	13.1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11	14	12	152	-14.3	-16.7	-1.6
15류	동식물성유지	985	750	707	8,893	-5.7	-45.4	-14.2
16류	육·어류조제품	25	19	14	169	-26.3	-30.7	23.6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277	291	331	1,929	13.7	43.9	-14.9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70	76	73	545	-3.9	2.7	16.0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52	266	211	2,072	-20.7	76.4	32.9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52	49	52	538	6.1	13.5	4.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108	107	94	956	-12.1	21.1	21.1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310	298	221	2,546	-25.8	-17.5	2.0
23류	조제사료	403	517	392	3,015	-24.2	123.5	14.2
24류	담배	17	54	131	1,034	142.6	23.9	29.1
합 계		8,621	7,759	7,437	75,655	-4.2	7.1	7.2

자료: 「中國海關統計(月刊)」 第278期, 第288期, 第289期, 第290期

◆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 11월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2.5억 달러로 10월에 비해 0.2%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0.9% 증가. 1~11월 누적 수출액은 2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
 - 품목류별: 농산가공품 41.2%, 채소 20.8%, 식량 15.7%, 특용잠사 13.5%, 축산물 4.3%, 과실 3.1%
 - 상위 10개 품목: 쌀(10.9%), 전분박(6.9%), 참깨(5.9%), 혼합조제식료품(5.6%), 고추(5.1%), 김치(3.8%), 기타채소(3.8%), 들깨(3.2%), 기타과실(2.7%), 한약재기타(2.4%) → 50.4%

표 5 대 한국 농산물 수출 추이(2013년 10월 ~ 11월)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10월	11월	1~11월 누적액	10월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농산물	식량	곡류	33,797	30,287	284,743	-10.4	882.1	209.8
		서류	325	495	5,386	52.3	-18.5	15.0
		두류	12,620	5,090	99,238	-59.7	-80.6	-30.3
		전분	2,409	2,930	24,864	21.6	19.3	-14.5
		계	49,151	38,802	414,231	-21.1	19.7	54.6
	채소	49,906	51,540	525,602	3.3	-17.6	0.8	
	과실	7,587	7,600	68,131	0.2	40.9	-0.3	
	화훼	1,126	1,599	14,356	42.0	6.0	33.0	
	버섯	1,786	1,831	13,927	2.5	18.5	-13.1	
	특용 · 잠사	채유종실	23,588	29,003	175,169	23.0	67.9	18.0
		차류	99	795	3,052	703.0	459.9	-2.4
		연초류	242	196	9,628	-19.0	-92.6	-4.7
		인삼류	179	187	3,147	4.5	42.7	54.4
		한약재	1,852	1,867	11,531	0.8	33.4	20.0
		잠사류	4,558	1,512	27,284	-66.8	-67.4	-14.8
		계	30,518	33,560	229,811	10.0	28.0	11.9
	농산가공품	91,875	102,187	1,226,429	11.2	-2.1	19.7	
소 계	231,949	237,119	2,492,487	2.2	1.3	17.9		
축산물	산동물	214	233	2,800	8.9	-8.3	-14.2	
	육류	2,713	2,624	27,022	-3.3	-2.2	0.8	
	난류	177	67	1,378	-62.1	-40.7	-32.1	
	낙농품	80	39	1,342	-51.3	-40.9	283.4	
	기타 축산물	13,242	7,716	99,379	-41.7	-8.7	3.4	
	소 계	16,426	10,679	131,921	-35.0	-7.7	2.6	
합 계	248,375	247,798	2,624,408	-0.2	0.9	17.0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11월 대 한국 농산물 수입액은 7천 만 달러로 10월에 비해 4.2% 감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10.4% 감소. 1~11월 누적 수입액은 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
- 품목류별: 농산가공품 67.8, 축산물 15.1%, 특용잡사 8.8%, 과실 6.9%, 채소 0.8%, 식량 0.4%, 화훼 0.3%
- 상위 10개 품목: 자당(17.0%), 혼합조제식료품(5.8%), 홍삼(5.4%), 커피조제품(5.3%), 비스킷(5.3%), 기타베이커리제품(4.4%), 가죽(4.4%), 라면(4.3%), 조제분유(3.7%), 유자(2.9%) → 58.5%

표 6 대 한국 농산물 수입 추이(2013년 10월 ~ 11월)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10월	11월	1~11월 누적액	10월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식품 농산물	식량	곡류	192	238	1,863	24.0	33.0	-14.3
		서류	10	8.6	151	-14.0	-46.3	128.8
		두류	0	2.4	364	-	-	313.6
		전분	0	0	15	0.0	0.0	-48.3
		계	202	249	2,393	23.3	27.7	1.6
	채소	1,297	554	11,254	-57.3	-49.8	4.1	
	과실	4,494	4,868	44,441	8.3	4.3	19.8	
	화훼	138	181	6,457	31.2	41.4	56.3	
	버섯	99	0	284	-100.0	-100.0	-51.9	
	특용 · 잡사	채유종실	26	3.3	103	-87.3	-82.6	-82.5
		차류	297	227	1,334	-23.6	2,737.5	178.5
		연초류	309	604	17,938	95.5	-71.5	-15.3
		인삼류	6,465	5,162	35,637	-20.2	303.9	17.9
		한약재	2	38	151	1,800.0	4,650.0	22.8
잡사류		36	110	370	205.6	5,689.5	63.7	
계	7,136	6,144	55,533	-13.9	79.1	5.1		
농산가공품	48,516	47,479	491,550	-2.1	-15.6	1.0		
소 계	61,882	59,475	611,912	-3.9	-9.6	2.9		
축산물	산동물	0	0	8	0.0	0.0	-73.3	
	육류	304	654	7,185	115.1	-16.0	100.3	
	난류	0	0	0	0.0	0.0	0.0	
	낙농품	6,226	4,254	64,131	-31.7	58.8	61.4	
	기타 축산물	4,701	5,685	60,722	20.9	-36.6	-18.9	
	소 계	11,231	10,593	132,046	-5.7	-14.7	11.7	
합 계	73,113	70,068	743,958	-4.2	-10.4	4.4		

자료: aT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표 7 2013년 11월 품목별 대 한국 수출입액 순위

단위: 천 달러, %

순위	대 한국 수출			대 한국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쌀	27,057	10.92	자당	11,883	16.96
2	전분박	17,036	6.88	혼합조제식료품	4,045	5.77
3	참깨	14,730	5.94	홍삼	3,771	5.38
4	혼합조제식료품	13,980	5.64	커피조제품	3,731	5.32
5	고추	12,592	5.08	비스킷	3,679	5.25
6	김치	9,505	3.84	기타베이커리제품	3,112	4.44
7	기타채소	9,315	3.76	가죽	3,109	4.44
8	들깨	7,904	3.19	라면	2,988	4.27
9	기타과실	6,668	2.69	조제분유	2,597	3.71
10	한약재 기타	6,020	2.43	유자	2,041	2.91
11	당면	5,492	2.22	단일과실조제품	1,549	2.21
12	당근	5,418	2.19	기타음료	1,544	2.2
13	땅콩	5,169	2.09	기타소오스제품	1,428	2.04
14	기타소스제품	4,857	1.96	기타 양모,섬수모,조수모 등	1,383	1.97
15	기타 양모,섬수모,조수모 등	4,556	1.84	생우유	1,290	1.84
16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4,090	1.65	글리세롤(조상의것)	1,148	1.64
17	채소종자	3,339	1.35	소원피	1,041	1.49
18	기타당	3,185	1.29	초코렛	1,005	1.43
19	초코렛	3,054	1.23	캔디	954	1.36
20	개 사료	2,834	1.14	대두유	938	1.34
21	마늘	2,804	1.13	기타과실	927	1.32
22	대두	2,802	1.13	소주	793	1.13
23	고구마 전분	2,767	1.12	수삼	735	1.05
24	배합사료	2,716	1.10	기타당	703	1
25	대두박	2,643	1.07	곶련	664	0.95
26	물	1,853	0.75	기타설탕과자	623	0.89
27	기타사료	1,809	0.73	혼합조미료	604	0.86
28	기타사료용조제품	1,745	0.70	인스탄트면	561	0.8
29	비스킷	1,741	0.70	방향성물질	492	0.7
30	파	1,664	0.67	과실혼합물	484	0.69
31	혼합조미료	1,653	0.67	맥주	469	0.67
32	밀리트	1,638	0.66	소시지	467	0.67
33	기타근채	1,598	0.65	기타파스타	409	0.58
34	기타파스타	1,476	0.60	곡류조제품	397	0.57
35	기타식물성액즙	1,464	0.59	연유	376	0.54
	합 계	197,178	79.6	합 계	61,939	88.4

자료: aT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주요 단신

◆ 10년 연속 식량 증산 전망, 2013년 식량 생산량 6억 194만 톤

-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3년 11월 29일 전국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3년 식량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1,236만 톤 증가한 6억 194만 톤(역사상 최고치)에 달해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10년 연속 식량 증산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망
 - 식량 재배면적은 1억 1,195.1만 ha로 지난해에 비해 74.6만 ha 증가
 - 식량 단수는 ha 당 5,377kg으로 지난해에 비해 75kg 증가

○ 지역별 식량 재배면적, 생산량 및 단수

지역	재배면적(천 ha)		생산량(만 톤)		지역	재배면적(천 ha)		생산량(만 톤)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북경시	193.9	159.0	113.8	96.1	호북성	4,180.1	4,258.4	2,441.8	2,501.3
천진시	322.9	332.8	161.8	174.7	호남성	4,908.0	4,936.6	3,006.5	2,925.8
하북성	6,302.4	6,315.9	3,246.6	3,365.0	광둥성	2,540.2	2,507.6	1,396.3	1,315.9
산서성	3,291.5	3,274.3	1,274.1	1,312.8	광서	3,069.1	3,076.0	1,484.9	1,521.8
내몽고	5,589.4	5,617.3	2,528.5	2,773.0	해남성	438.6	421.8	199.5	190.9
요녕성	3,217.3	3,226.4	2,070.5	2,195.6	중경시	2,259.6	2,253.9	1,138.5	1,148.1
길림성	4,610.3	4,789.9	3,343.0	3,551.0	사천성	6,468.2	6,469.9	3,315.0	3,387.1
흑룡강성	11,519.5	11,564.4	5,761.5	6,004.1	귀주성	3,054.3	3,118.4	1,079.5	1,030.0
상해시	187.6	168.5	122.4	114.2	운남성	4,399.6	4,499.4	1,749.1	1,824.0
강소성	5,336.6	5,360.8	3,372.5	3,423.0	서장	170.9	171.6	94.9	95.8
절강성	1,251.6	1,253.7	769.8	733.9	섬서성	3,127.5	3,105.1	1,245.1	1,215.8
안휘성	6,622.0	6,625.3	3,289.1	3,279.6	감숙성	2,839.4	2,858.7	1,109.7	1,138.9
복건성	1,201.1	1,202.1	659.3	664.4	청해성	280.2	280.0	101.5	102.4
강서성	3,675.9	3,690.9	2,084.8	2,116.1	영하	828.3	801.6	375.0	373.4
산둥성	7,202.3	7,294.6	4,511.4	4,528.2	신강	2,131.2	2,234.8	1,273.0	1,377.0
하남성	9,985.2	10,081.8	5,638.6	5,713.7	합 계	111,205	111,951	58,958	60,194

자료: 人民網-財經頻道(2013.11.29)